

편입학에 관한 내규

제1조 (목적) 이 내규는 학칙 제10조에 따라 편입학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편입학시기) 편입학은 매학기 초 30일 이전에 실시한다.

제3조 (모집정원 및 선발) ①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(일반편입학)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다.

② 일반편입학의 모집정원은 교육부의 대학 편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여석 산출방법에 따른 범위에서 정한다. 단, 정원 외 편입학(학사편입학 포함)의 모집정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③ 학사편입학의 모집정원은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2%, 해당 학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4% 이내로 한다.

④ 편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.

[전문개정 2016.01.12.]

제4조 (지원자격) (지원 자격) ① 일반편입학은 3학년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,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전문대학 졸업자 및 법령에 의해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학력이 인정되는 자
2. 4년제 정규대학(방통대 및 산업대 등 포함)에서 2학년 또는 4개 학기(계절학기 제외)이상 수료한자로 총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3.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취득자로 총 8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4. 「고등교육법」 제50조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과정을 2학년 또는 4학기(계절학기 제외) 이상 수료하고 총 6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

② 정원 외 편입학은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29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반편입학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③ 학사편입학은 대학교 및 각종학교, 독학사, 시간제등록, 학점은행제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3학년에 정원 외로 편입학 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6.01.12.]

제5조 (학점인정) ① 전공과목에 대한 학점인정은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“C0” 이상의 교과목 및 학점만 인정하며 이수해야 할 잔여과정은 일반학생의 수강신청요령에 의하여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8., 2011. 4. 13.>

② 학점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는 학점인정결정서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교무처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여하한 이유로도 이의 또는 재고를 요청할 수 없다.

제6조 (학점이수) ① 3학년에 편입학자는 4학기 이상을 의무등록하고 70학점 이상을 이

수하여야 하며 2009학년도 입학부터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3.>

② 학사편입학자는 졸업에 필요한 70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, 2009학년도 입학부터는 6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8., 2011. 4. 13.>

③ 일반 및 학사편입학자는 편입학한 학과의 전공과목(필수, 선택)을 이수하여야 하며, 편입학한 학년의 교과과정에 따라 현 교과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타 졸업에 필요한 제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3.>

제7조 (수업연한) ① 편입학한 자의 수업연한은 편입학한 학년의 수업연한과 같다.

② 편입학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위하여 학점등록을 할 수 있다.

제8조 (조기졸업) 편입학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.

제9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매년 교육인적자원부의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.

[본조신설 2007. 8. 8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제정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내규의 개폐) 이 내규의 개폐는 교무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이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 내규는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.